

부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3159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3. 19.

판결 선고2024. 4.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165,799원 및 그중 29,165,789원에 대하여 2023. 2. 20.부터 2023. 5. 17.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2. 8. 29. 접수 제332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2020. 4.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2022. 5.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각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22. 10. 14.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카드론 채무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E의 연체정보에 등록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3. 2. 20. 피고 A를 대위하여 C에 대출금 채무 19,116,338원(= 원금 18,750,000원 + 이자 366,338원)을, D에 대출금 채무 10,101,730원(= 원금 10,000,000원 + 이자 101,73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들은 2022. 8. 26.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달 29.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22. 11. 30. 피고 A를 상대로 사실혼해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2525), 위 소송에서 2023.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3. 1.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상대방(피고 A)은 청구인(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C, D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 잔액은 29,165,789원(= C 19,116,338원 + D 10,049,451원)이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7%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29,165,789원 및 확정손해금 100원의 합계 29,165,889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9,165,78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5. 17.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23. 2. 20.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 성립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29,165,799원의 채무 외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38,216,852원의 채무(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채무이다)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그 외에도 피고 A는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카드론 채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3. 3. 21. 기준 감정평가액은 14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23. 3. 21.로부터 약 7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과 유사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외에 남은 잔액은 피고 B의 돈을 지불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피고 B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 B은, 2020. 5.경 피고 A와 별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23. 1. 12.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A가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들 사이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피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호림

별지